

어 린 이 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31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절차,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현장조사 방법 및 절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교육방법·교육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이용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및 별표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이용시설에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 9개 유형의 시설을 규정함

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3조 및 제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어린이안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라. 안전교육 방법 등(안 제11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2) 어린이 안전교육의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8. 5. ~ 9. 1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법 제3조제3호사목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1에서 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

거나,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 사유,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조사 시작 7일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조사와 관련

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대상 및 내용이 다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그 사유,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조사 실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위반행위에 관계된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에서의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공표 대상임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실시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 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 이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6항의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

④ 제3항 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안전교육 기준을 정한 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훈련(2시간이상의 실습교육 포함)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어린이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법 제16조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실시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관련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4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교육 활성화
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대통령령 제 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대한 경과조치)제1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주체는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로 된자와 202
1년 10월 1일 이전에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자로 하여금 2021년 12월 31일
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어린이이용시설(제2조 관련)

1.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유아교육, 체험을 위한 시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유치원·초등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8.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2. 개별기준 가.의 공공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이 해당)
9. 「과학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관(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지정 등이 필요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이용 시설”로 고시하는 시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제8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교육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	--------	---------------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제2항	100	200	300